

대법원 2016. 1. 14 선고 2015다23574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6. 1. 14 선고 2015다235742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15. 9. 3 선고 2012나54128 판결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 1. A

2. B

피고,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

판결 선고 2016. 1. 14.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. 9. 3. 선고 2012나54128 판결

주 문

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N

이 유

1. 상고이유 제2점 중 가압장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

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, 이 사건 H지구 이주자택지 조성비 중 상수도시설로서의 가압장 설치비용은 '용지비 및 조성비 내역'(을 제19호증)상의 상수도공사비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, 위 '용지비 및 조성비 내역'상의 가압장 공사비 6,044,000,000원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압장 설치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위 가압장 공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.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가압장 공사비를 생활기본시설 개별 조성비에 산입하였다.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.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.

2. 결론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박상옥

대법관이상훈

주심대법관김창석

대법관조희대